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1

심의일자	2017. 08. 22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/ 송파구 신천동 20-4번지 일원		
의결번호	2017-24-5	심의결과	원안의결
〔심의 내용〕 건축 분야			
■ 제출한 안에 대하여 원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.			
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			
〈 건축분야 〉			
○ 발코니 삭제기준 완화신청은 신청한대로 74㎡A·B·C형, 84㎡A·B·C·D·E형, 104㎡B형, 129㎡B형, 157㎡B형은 15%를 104㎡A·C·D형, 118㎡A·B형, 129㎡A형, 157㎡A형은 10%를 84㎡F형은 5%를 완화 인정함.			
〈 공통사항 〉			
1.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 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. 가. 녹색건축물 인증 : 최우수(그린1)등급 이상 나.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: 1등급 이상 다.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 : 114.9kWh/㎡·y(주거), 173.25kWh/㎡·y(부대) 188.95kWh/㎡·y(비주거)			
2.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, 급·배기구,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(SKY VIEW)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외관을 마감하시기 바람.			
3. 수돗물 재처리시설(중앙정수처리장치) 설치·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, CO ₂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“불필요한 시설”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.			
4.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(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). 1) 대지면적 1,000㎡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,500㎡이상의 건축물. 2)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‘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’을 참고하여 적용.			
5. 『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』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설계·시공하기 바람. 끝.			

2017. 08. 22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